

## □ 연금시장리뷰 42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첨부자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학연금공단 김수성 세무학박사(02-769-4426,mercury@ktpf.or.kr)

##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제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적·개인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기업적 차원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금저축제도를 통해 3 층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의 도입 수준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수준은 2011년 2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가 266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는 현행 퇴직연금 관련세제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와의 통합적 시각을 통해 살펴 볼 때 그다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연금소득과세는 일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의 퇴직소득과세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선택을 꺼리게 된다.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세제유인을 통해 가입단계로부터 급여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퇴직연금을 통해 지속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연금소득 과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IRA 등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가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의 한도를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는 IRA의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며, 급여단계에서는 소득공제의 한도를 증액하고, 가급적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소득 합산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합산과세를 폐지하거나 종합소득항목에서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일시금을 선택하는 유인은 감소되고 연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본다.

현행 연금소득과세상 퇴직급여의 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부담이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간에 세부담에 형평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소득과세는 퇴직연금 하나만을 놓고 과세개선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incentive)을 모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세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세제의 개선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당국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I. 2011 년 퇴직연금의 현황**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황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 년 12 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가입이 저조한 수준임
  - 2011 년 4 월 현재 전체 사업장 상용근로자 수 약 870 만명 중 30.5%인 266 만명만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사업장(1,422,261 개소)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7.3%로서, 도입 사업장 수는 104,092 개소이며, 이 중 DC 형 도입 사업장이 40,688 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39.1%)를 차지하고 있음
- 2011 년 4 월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총 규모는 32 조 9,491 억원이며, 총 퇴직금 추계액 약 123 조원에 대비하여 퇴직연금 적립률은 24.5%를 보이고 있음
  - 적립금 잔액은 권역별로 살펴볼 때 은행권역은 14 조 7,234 억원으로 가장 높은 적립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권역과 증권권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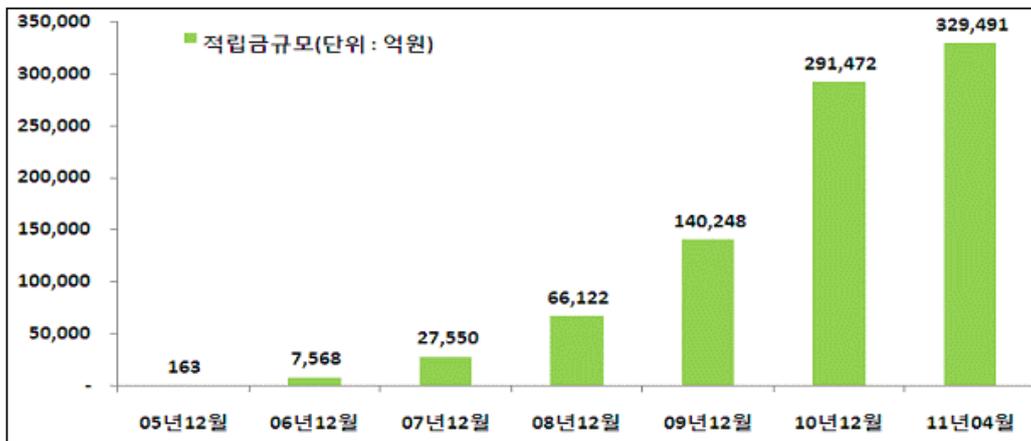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계
'11. 4 월	160,280	84,940	25,699	58,560	329,491
'11. 3 월	154,452	81,784	25,272	56,375	317,883
증가액	5,823	3,156	427	2,185	11,608

주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참조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총규모〉



주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참조

○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함
  -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그러나 아쉽게도 세제에 대한 개편안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연금소득과세 관련 세법 개정내용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간 400만원으로 한도를 증액하였음.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 일시금 선택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소득 정률공제의 한도를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한도를 축소하였음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연적임
  - 퇴직일시금 대비 퇴직연금 선택이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는 불합리한 연금소득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가입자의 세제 유인책(tax incentive)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II. 공적·퇴직·개인연금 관련 세제의 개요

### 1. 가입·운용·급부 세제 개요

#### ○ 가입단계의 세제

-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연간 400 만원 공제한도 적용
  - 공적연금의 부담금 불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은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됨
  -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부담금 적립시에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 만원의 한도가 적용됨
  - 공적연금중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반액씩 부담함. 사업주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급부시에 비로소 과세됨

#### ○ 운용단계의 세제

- 퇴직연금의 운용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되고 있음
  - 공적, 퇴직, 개인연금 공히 EET 의 과세형태로 운용단계는 과세가 이연하여 급부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음

#### ○ 급부단계의 과세

- 일시금 선택시에는 퇴직소득 과세, 연금선택시에는 연금소득 과세로 이원화됨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퇴직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함
  - 개인연금의 경우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1-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 지급액)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총 연금소득액이 600 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600 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며, 일정 한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인정함. 반면, 근로자가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및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됨

## 2. IRA 를 활용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유도

- 최근 IRA 를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IRA(과세이연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으로 인한 노후소득 증대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 IRA 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IRA 계좌에 가입하여 퇴직시점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음
  - 현행 세법상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IRA 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됨
  - IRA 는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데, 대체로 퇴직소득세가 이자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최근 퇴직연금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음. 과세이연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IRA 의 주요 특징〉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퇴직,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
납입기한	퇴직일 혹은 중간정산금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
납입금액	퇴직급여 전액 혹은 퇴직급여의 80%이상 (세전)
자산유형	퇴직연금상품(원리금 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중 고객이 선택 운용
인출 및 수령	연금(55 세 이상인 경우) 또는 일시금 중 선택(중도해지 가능)
세제혜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통한 세제혜택(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이자소득세→ 퇴직소득세)
통산장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통산하여 은퇴시점까지 적립
연금수령	55 세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선택에 따라 일시금도 가능

주 : 국민은행 퇴직연금팀 자료 참조(2011)

### Ⅲ. 현행 퇴직연금소득 과세체계 상의 문제점

#### 1. 가입단계에서의 세제유인 미흡에 대한 문제점

##### ○ DC 형/기업형 IRA 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볼 경우 DC 형 퇴직연금과 기업형 IRA 에는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행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의 유인책으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운용단계에서의 과세상 문제점

### ○ 선택규정과 중도해지 가능으로 인한 활성화 미흡

- IRA 제도가 별다른 제약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은 통산 장치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임
  - IRA 는 DC 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함. 또한, 아쉽게도 IRA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3. 급부단계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점

### ○ 연금선택시 세부담이 증가되어 일시금 선호의 문제점

-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 선택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 현행 연금소득세제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 현행 세제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퇴직일시금의 퇴직소득세 보다 세부담이 커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수령 가능한 연금의 종류가 많을수록 연금선택의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점
  - 근로자가 공적, 퇴직, 기업연금 등에 가입하여 수령가능한 연금의 종류가 많을수록 퇴직연금을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려고 함
  - 공적연금은 유족연금제도의 존재로 연금을 선호하고, 개인연금은 일시금 선택시 기타소득으로 22%의 과세가 되어 연금선택을 선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합산과세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선택하려 함. 현재 연금법상 수령가능한 연금과 일시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각 연금제도별 수령가능한 연금과 일시금의 유형 비교〉

공적연금 가입여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A	연계연금	연금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 가입자	○	○	○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IRA 수령 가능
특수직역 연금가입자	×	○	○	×	특수직역연금+연금저축+IRA 연금 수령 가능
공적연금 연계연금 신청자	○	○	○	○	연계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IRA 수령가능
공적연금 연계연금 미 신청자	○	○	○	×	퇴직연금+연금저축+IRA 수령가능

- DC 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 우리나라 DC 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400 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
  -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가 240 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부담금에 대한 유인 효과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세제상으로 살펴볼 때 추가적으로 16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유인효과 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퇴직일시금 과세방식인 퇴직소득금액 보다 불리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세제체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세제가 유지되는 속에서는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굳이 연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수요는 감소될 것임
  - 현행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의 부담세액의 상호비교는 다음과 같음

〈일시금과 연금의 부담세액 비교〉

(단위 : 원)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1,011,185	478,702	-	-	-
2분위	2,180,584	2,196,656	849,271	-	-
3분위	3,132,797	4,609,003	1,557,374	1,039,500	221,339
4분위	4,274,348	9,357,635	3,924,720	2,498,825	1,744,788
5분위	7,195,299	22,207,748	13,305,263	5,921,616	5,867,540

주 :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지 2010년 4월 참고

○ 과세이연계좌(IRA)의 세제상 미흡

- 가입자와 가입재원의 제한으로 인한 활성화 지연
  - 현행 법조문 상에서 IRA 의 가입재원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재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납입재원을 한정하고 있음
  - 게다가 근로자의 IRA 에 대한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IRA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IRA 는 적립이 가능한 자금을 '퇴직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노후를 위한 대비 자금을 IRA 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추가납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퇴직금의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지 않고 80% 이상만을 불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의 일부분은 생활자금으로 전용되어 버리기 쉬운 면이 있음

**IV.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기존의 퇴직연금의 세제는 퇴직연금 자체만을 고려하여 연금세제의 체계를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향후에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다양한 세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 가입단계의 소득공제 확대**

○ DC 형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DC 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의 수준을 개인연금 공제수준인 400 만원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별도세제를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실질적인 혜택부여로 인한 개인형 IRA 의 활성화 유도
  - 우리나라의 개인형 IRA 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세금 혜택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미국의 IRA 는 개인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이 가능함
  - 따라서 세제 혜택을 더 부과할수록 근로자가 IRA 계좌를 통해 노후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증가하게 됨

## 2. 운용단계의 IRA 해지시 엄격한 패널티 부과

- IRA 해지시 엄격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함
  - 현재와 같이 IRA 중도해지를 별도의 제재 없이 계속 허용한다면 통산 수단으로서의 IRA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도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IRA 해지에 따른 세제상 패널티를 엄격하게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IRA 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퇴직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기간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의 노후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IRA 해지시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 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음

## 3. 급부단계의 연금 선택 유인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 ○ 모든 연금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 강화

- 일시금으로 선택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은 금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세액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으나, 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 향후 연금수급자가 어느 시점까지 생존할지에 대한 추정의 문제가 있어 세부담 효과를 산출하기가 다소 어려운 특성이 있음

### ○ 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와 연금소득공제금액의 인상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현행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개선이 필요한 바, 기존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금액,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일시금을 선택하였을 경우의 세부담보다 불리하여 근로자는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액이 일시금 선택에 대한 과세부담액보다 불리하여 연금선택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종합소득에서 연금소득을 배제하거나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한도 증액
  - 공적, 퇴직, 개인연금의 급여를 합하여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급여단계의 모든 수령 가능한 연금을 고려한 연금소득공제 확대

- 현행 연금소득 과세를 모든 연금제도를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되어 중하위층에 가능한 한 많은 세제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금액,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낮추고,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금소득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제상 불리한 구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제를 일원화하여 연금소득세제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분리과세 유도

- 현재 총연금액이 6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희박하므로 공적·퇴직·개인연금 모두에 대하여 각각 600 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하거나, 공적·퇴직·개인연금을 합하여 총 연금액이 1,8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과세방식의 다양한 방안 추진

- TEE의 과세방식 도입<sup>1</sup>

○ 다양한 IRA의 시도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음

- ① 전통적 IRA (traditional or deductible IRA)
  - 가장 일반적인 IRA로 \$2,000 또는 연소득 중 작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되며 비과세로 퇴직시까지 증식되어 과세 이연함.
- ② 교육 IRA (educational IRA)
  -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IRA이며 1년에 \$500까지 적립.
  -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적립금의 비과세 증식으로 과세 이연.
- ③ Roth IRA
  -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적립금 소득 완전 비과세.
  - 전통적 IRA와의 비교는 저축 기간 등에 의존.
- ④ 비소득공제 IRA (nondeductible IRA)
  - 전통적 IRA의 자격이 없는 고소득층에 적합.
  - \$2,000 또는 연소득 중 작은 금액까지만 적립.

- IRA 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1(k) plan 의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 다른 401(k) plan 에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그 적립액을 퇴직후 일정기간에 다른 IRA 에 전환하면 비과세로 이관할 수 있다. 이를「Rollover IRA」라고 함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Roth IRA 제도와 같은 과세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음

## V. 맺는 말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연적이며, 현재의 세제지원보다는 한층 강화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DC 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연금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 하여 중하위 계층에 보다 높은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세제를 고려할 때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혜택은 지양되어야 하며, 공적·퇴직·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연금세제의 개선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본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지(2010년 4월 30일자)와 한국세무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및 2011년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 발표자료를 참조할 것

사학연금공단 김수성 세무학박사(02-769-4426,mercury@ktpf.or.k)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15일	7월 2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91	3.01	0.10%p
	엔/달러	92.93	88.43	81.19	79.14	78.84	-0.30¥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163	1.4267	0.0104\$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480	12,724	244p
	닛케이 지수(p)	10,655	9,383	10,229	9,974	10,010	3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8	3.75	0.07%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58.1	1,054.6	-3.5 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145.2	2,145.0	-0.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15일	7월 21일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7.30	99.09	1.79\$
	Dubai	78.06	73.14	88.80	109.80	111.50	1.70\$
CRB 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6.30	345.27	-1.03p	

1) CRB 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제공)